

의안번호	2114717
의 퇴 인	이헌승의원
회 답 일	2022. 03.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포상금 지급(안 제46조의2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¹⁾를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른 ‘20년~’21년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 추가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실적)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포상금 관련 규정

1) 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소음허용기준 초과 제외)]
(단위: 건, 만원)

합계		2020년			2021년		
		100만원 부과건수	60만원 부과건수		100만원 부과건수	60만원 부과건수	
			소음기/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소음기/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건수	34	1	10	4	2	8	9
포상금	216만원	10만원	60만원	24만원	20만원	48만원	54만원
		94만원			122만원		

주: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²⁾

자료: 환경부 교통환경과

- 최근 2년간의 개정안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약 1백만원(포상금 6~10만원/건)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미첨부 사유 제1호에 해당

2) 포상금 지급률은 참고자료의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관련 규정을 참고바람

[참고자료] 포상금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관련 규정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충남 당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당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금액(제3조 관련)]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table border="1"> <thead> <tr> <th>부과처분금액</th><th>포상금</th></tr> </thead> <tbody> <tr> <td>○ 500만원 이상</td><td>20만원</td></tr> <tr> <td>○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td><td>10만원</td></tr> <tr> <td>○ 100만원 미만</td><td>5만원</td></tr> </tbody> </table>		부과처분금액	포상금	○ 500만원 이상	20만원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만원	○ 100만원 미만	5만원
부과처분금액	포상금								
○ 500만원 이상	20만원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만원								
○ 100만원 미만	5만원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제2조의 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에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2. 과태료,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	
1) 지급율: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2) 지급액: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운전자 소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타.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발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지수현
연 락 처	02-6788-3735
	zisu37@nabo.go.kr
